

수원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879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숙

피고, 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김민순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2. 7. 13.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18가단556576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E 전 2,393㎡ 중 1/2 지분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8.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30946호로 마친 2017. 9.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49,822,4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E 전 2,393㎡ 중 1/2 지분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8.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30946호로 마친 2017. 9.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이유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지분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2/9 지분에 환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망인이 경작하였던 벼 역시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망인과 피고가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가 변제한 망인의 채무와 각종 보험료 등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채무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1)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이유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욱, 판사 안좌진, 판사 이해미

1) 한편 원고들은 당심에서 ‘망인의 장례기간에 유족들이 원고들과 피고가 조문객들로부터 수령한 부의금 47,520,000원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모두 가져갔으므로, 피고는 해당 금원을 원고들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장례식에서 수령한 부의금이 47,520,000원 상당이고, 해당 금원을 피고가 모두 가지고 갔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